

(표지)

감정평가사 자격증



국 토 교 통 부

80mm × 120mm [백상지 (120g/㎡)]

(표지 뒤쪽)

주 의 사 항

1.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이 자격증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,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여 주어야 합니다.
2. 감정평가사는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80mm × 120mm [백상지 (120g/㎡)]

(제3쪽)

감정평가사 자격증

성 명 : ()

생년월일 : 년 월 일 사 진 (3.5cm × 4.5cm)

자력취득 연 월 일 : 년 월 일

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발급합니다.

년 월 일

국토교통부장관 직인

80mm × 120mm [백상지 (120g/㎡)]